

※ 회원자격 별첨 규정 [2022.06.21. 개정] ※

1. 해당지역이라 함은 광역단위 시·도를 포함한다.
2. 최근이라 함은 인준하는 이사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 4개의 공연작품 실적 가운데 이사회일 기준 최근 만 1년 이내, 만 2년 이상 자료에 대한 증빙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4. 4작품 중 최소 해당지부 2편, 해당지회 1편 이상의 공연작품이 있어야 하며, 지부가 없는 지회는 해당지회 3편 이상으로 한다.
5. 해당지역 단체가 타 지역에서 공연한 작품은 해당지역으로 본다.
6. 한 분야에 2편 이상의 공연실적이 있어야 하고 진행, 단순진행, 단순크루 등 전문적 영역이 아닌 부분은 경력에서 제외한다.
7. 경력단절 기간은 만 5년까지만 인정한다.
8. 공연작품이라 함은 연극의 일반적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공연으로
 - (1) 쇼, 퍼포먼스, ~~거리공연, 낭독극~~, 워크숍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022.06.21. 일부 삭제]
 - (2) 낭독극, 쇼케이스, ~~거리공연~~, 단막극의 경우 3편을 1편으로 인정한다. (단막극의 경우, 20분이상 50분 이내의 극을 말한다.) [2022.06.21. 일부개정]
 - (3) 신체극과 무용극, 국악극 등의 경우 협회 소속 연극 연출가에 의해 만들어진 공연은 포함한다.
 - (4) 온라인 공연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대체된 경우는 인정하나, SNS 등의 게재만을 목적으로 한 공연은 인정하지 않는다. [2022.06.21. 신설]
9. 학생극이라 함은 협회 소속 정단체 극단의 공연이라 하더라도 출연진 절반 이상이 학생일 경우이거나 학교행사를 목적으로 제작된 공연으로 재학생과 함께 공연한 작품을 말한다. 그러나 입회를 희망하는 자가 만 20세 이상의 학생신분으로 기성 극단에서 활동한 실적은 공연 실적으로 간주하되, 고등학생 신분으로 출연한 작품은 공연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0. 공연실적을 산출함에 있어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다른 연출 또는 다른 역할일 경우 다른 작품으로 인정하며, 동일 연출 혹은 동일 역할일 경우에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다면 다른 작품으로 인정한다. [2022.06.21. 일부개정]

11. 극작분야는 기간에 관계없이 신춘문예를 비롯한 전국 단위의 공모전에 당선했거나 협회 정단체에서 2작품 이상 공연실적이 있는 자는 회원자격을 갖는다. 단, ~~공동연출, 단막극의 경우 3작품을 1작품으로 인정한다.~~ 단, 아래와 같이 예외규정을 둔다.
- (1) 단막극은 3작품을 1작품으로 인정한다.
 - (2) 공동극작의 경우 2작품을 1작품으로 인정한다.
 - (3) 각색은 두 편을 창작 한 편으로 하되, 순수창작 한 편은 필수로 한다.
 - (4) 동일작은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2022.06.21. 신설 및 일부개정]
12. 연출 분야는 협회 정단체에서 2작품 이상 공연실적이 있을 때 회원자격을 갖는다. 단, 아래와 같이 예외규정을 둔다.
- (1) 공동연출 및 단막극은 3작품을 1작품으로 인정한다.
 - (2) 협력연출은 인정하지않는다.
 - (3) 동일작은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2022.06.21. 신설 및 일부개정]
13. 모든 공연작품의 적부판정은 심의위원(소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여 의사회 안건으로 선정된다.